

# 중국 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의 국제법 실천

-저우찌엔1)(周键)

개요 : 중국과 베트남 북부 해양경계획정은 견실한 법률적인 기초가 있으며 경계획정의 공평한 해결을 실현한 하나의 성공적인 국제법 실천사례이다. 동시에 중국이 기타 해양인접국과 해양경계획정을 하는데 성공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토, 경계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국가의 근본이익과 맞닿아 있으며 국민감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협상이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와 결정적인 요소는 당사국 국내정치가 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있는지 여부이다. 협상 매커니즘을 수립하면 충돌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당사국 양측의 관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에 창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국제법 기초위에 국제관행을 참고하여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며 양국민의 근본과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평등협상, 상호양해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 공평 합리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12월 25일 중국과 베트남은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양국 베이부만 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협정’ 과(이하 베이부만 경계협정)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베이부만 어업 협력 협정’ (이하 베이부만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6월 30일 양국은 허난성에서 ‘중국 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협정’ 의 비준서를 교환하였고 ‘베이부만 어업협정’ 의 효력 발생 각서 교환식을 진행하였다. 같은 날 상술한 두 협정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베이부만 경계협정은 중국이 신봉하는 평화외교정책의 중요한 성과이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후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육지 국경조약’ (이하 육지국경조약)과 ‘중국 베이부만 경계협정’ 을 체결하여 오랜 기간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던 두 개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선린우호, 전면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고 베이부만 지역은 오랜 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였다. 베이부만 경계협정의 체결은 중국 주변 이웃 국가들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법적 실천이 되었고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은 중국의 첫 번째 해양경계의 탄생을 의미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협상을 통해 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실천은 새로운 국제 해양법률 질서에 부합하고 국제 해양법 제도의 발전 추세와도 일치한다.

1) 전 외교부 국경 및 해양사무대표

# 1.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의 역사와 현실적인 배경

## 1) 베이부만의 자연지리 개황

베이부만은 남중국해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양국 육지와 중국 하이난섬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만이다. 대략적인 위치는 북위 17도 ~ 21도, 동경105도 40분 ~ 109도 50분 사이이며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184해리, 가장 좁은 부분은 112해리이다. (그림 1; 아래 베이부만 범위 표시 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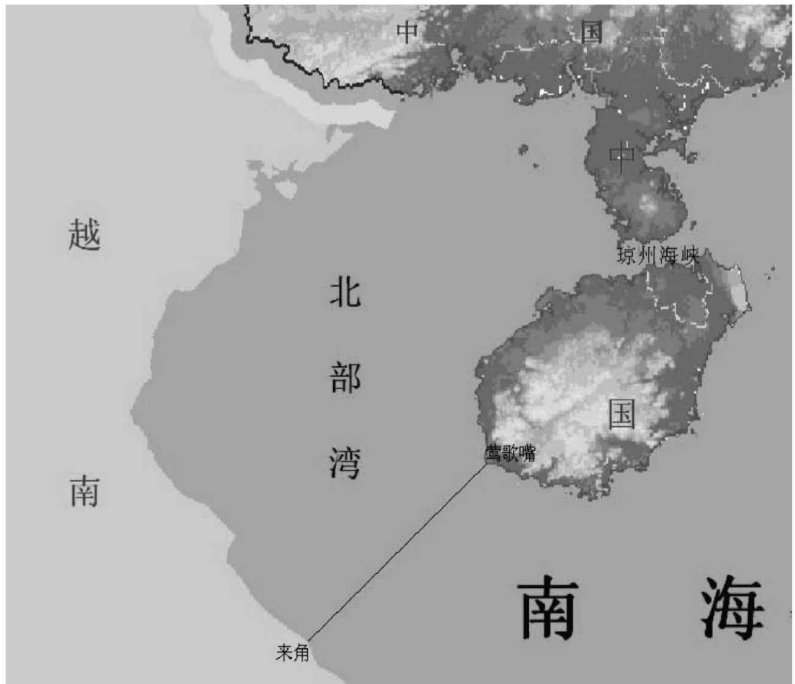


图1 北部湾及其范围示意图

베이부만은 한나라 시대 ‘장해’ 라고 불렸고 송나라 시기에는 ‘교양’, 1880년대 이후에는 ‘동징만(통킹만, Tonkin Gulf)’ 이라고 불렸다. 1855년부터 베이부만(베트남어 “Vanh Bac Bo”, 베이부만과 같은 의미) 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베이부만은 자연지리적으로 동/남의 두 개의 출입구 해역이 있다. 동쪽입구 해협은 경주(치옹저우;琼州)해협이라고 불리는데 그 경계는 하아난다오(해남섬;하이난섬)와 닿아 있고 레이저우(뇌주)반도 서남단의 끝 사이의 연선 역할을 하며 길이는 약 32.2km이다.

남부출입구 경계는 통상 중국 하이난섬 서남단의 잉꺼주이(莺歌嘴)와 베트남의 용링 근처의 각 사이의 연선으로 구성된다. 길이는 약 228.8km, 즉 112해리이다. 이 선은 ‘베이부만 봉쇄선’ 이라고 불린다.

상술한 내용에 따라 베이부만의 서남~동남방향의 길이는 480km이고 너비는 약 230km이다. 1964년 중국 해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베이부만 해역의 총면적은 약 128000km<sup>2</sup>

이다.

## 2) 베이부만에서의 중국과 베트남 해양관할 실천

1970년대 이전 베이부만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분쟁은 없었다. 양국이 베이부만에서 선박수송, 어업, 해양연구를 할 때도 충돌은 없었다. 양국은 각자 자국의 법률과 관습법에 따라 베이부만을 관할하였고 양국의 관할범위는 국제법으로 선포된 영해 너비를 가졌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957년, 1961년과 1963년 3번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 각자의 영해의 어업 관할권 및 양측 어업협력 문제에 규정을 정하였다. 이 협정은 어민, 어선이 태풍을 만났을 때 각국 항구를 대피소로 출입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거리에 대해서, 양측은 3~12해리 이외의 해역에는 상술한 3개의 어업협정에 동일하게 규정된 바와 같이 양국 어민의 공동 조업구역으로 하였다. 이는 사실상의 공해 자유원칙, 즉 양국어민에게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져 온 관습에 기초한 것으로 자유 출입, 자유 조업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통해 양국 어민의 베이부만에 대한 전통적인 어장과 전통조업권이 형성이 되었다.

이 외에도 1959년 6월 27일, 중국과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하는 베이부만 종합조사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59년 12월 ~ 1960년 12월, 1961년 12월 ~ 1963년 4월 두 번의 협력을 진행하여 베이부만 해양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하였고 조사 프로젝트는 베이부만의 해양 수문지질과 해양생물 조사를 포함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국정부는 베이부만에 해상 후즈밍 통로를 개척하였고 베트남 국민의 항미전쟁을 지원하였다.

## 3) 중국 베트남 베이부만 해양관할권 분쟁의 시작

1945년 9월 28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대륙붕 해저와 자연자원에 관한 정책 공고’를 발표한 이래로 현대 해양 개발기술의 진보와 연해국의 해양자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대 해양법 제도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연해국의 해양 주권이 영해 외부로 확장이 되고 영해 자체의 범위도 이에 따라 확장되었다. 1960 ~ 70년대, 일부 제 3세계 국가는 일방적으로 국제연합 해양법 회의에서 제시한 200해리 해양권익의 주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이 통과되면서 연해국의 해양주권을 특정한 해양 구역(내수, 영해와 중간지대)의 주권 관할권에서 200해리 심지어 더 넓은 범위의 해양자연자원 해저와 그 아래 구역의 주권권리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이 발전과정에서 베트남은 1970년대 초 일본, 이탈리아 석유기업과 협의를 하여 상술한 석유기업이 베이부만 해역에서 지진조사 작업을 하도록 위탁하였다. 정식으로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1973년 중국 주 베트남 대사를 통해 중국에 베

이부만 경계를 나누는 것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동시에 외교부장관은 베트남은 이미 일본, 이탈리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국이 베이부만 경계를 나누기 전, 1974년 1월부터 동경 108도 서쪽 부근에서 탐사와 지진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첫째, 베이부만은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공동해역으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가지므로 베트남이 제 3국을 베이부만에 들어오도록 하여 탐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양국 경제발전과 국방안보이익에 좋지 않다. 둘째, 중국은 양국이 경계확정을 하기 전 베이부만의 중간지대에 들어와 조사 및 탐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셋째, 베이부만의 대륙붕은 중국과 베트남 양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라 협상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베이부만의 해역 및 해저를 포함해 경계확정을 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중국이 건의에 대해 베트남은 답은 하지 않았으나 일본과 이탈리아 등의 석유기업의 오일가스 탐사와 조사에 대한 협상은 잠시 멈추게 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외교적인 루트로 각자의 베이부만 영해해역 및 해저자원의 주장을 밝혔는데 양 국가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양국의 베이부만 해양경계확정의 쟁의의 형세는 사실상 이미 형성이 되었다.

#### 4) 1970년대 베이부만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 두 번의 경계확정 협상

상술한 상황에서 양국은 1974년, 1977년~1978년의 두 번의 경계확정 협상을 진행하였다.

##### ① 1974년 협상

협상 초기 베트남은 1887년 ‘중국과 베트남 경계 지속 논의 전속 조약(이하 전속조약)’의 법 본문으로 ‘파리 자오선 동경105도 43분 선, ‘경계를 이룬다’는 문구와 대조표에 표시된 제한선에 따라 베이부만에 대해 이미 양국이 이미 경계확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베트남의 주요근거와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제한선(단홍선) 경도, 즉 동경 108도 03분 12초선은 중국과 베이부만의 해상경계선이다.

둘째, 최근 백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정권과 베트남은 일관되게 이 선에 따라 권리행사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따라서 베이부만은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적인 해양 만이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전속조약 및 제한선을 근거로 양국은 베이부만이 양국의 수역, 해저, 공중에 속한다는 것을 정하였다.

그 후 중국은 베트남의 동경 108도 03분 12초선이 베트남과 중국의 베이부만의 해상 경계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인 조약,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 주장을 반박하였다.

우선 전속조약의 대조표는 하나의 작은 경계선으로 약 12km이며 연해국 도서에 귀속 되는 섬으로 이를 양국의 해상경계선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하이난다오 남단의 500km까지 연장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은 베이부만을 지금까지 베이부만에 대해 경계획정을 한 적이 없으며 양국 사이에 소위 해상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동경 108.03선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다.

셋째, 중국은 베트남의 베이부만이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적인 수역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술한 것을 감안하여 중국은 중국과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공평하게 경계획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 ② 1977~1978년 협상

중국과 베트남이 진행한 1977~1978년의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은 양국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다. 협상중에 양국은 다시한번 각자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였고 1974년 협상과 관련된 문제와 입장에 대해 각자 변론만 했을 뿐 해양경계 획정에서 실질적인 토론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두 번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중국과 베트남 관계 악화의 원인 외에 국제 해양계획정 법률체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대륙붕 법률체도가 일찍이 확립이 되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아직 형성되고 확립되는 과정에 처해있었던 데다가 당시 양측의 협상 해결을 위한 베이부만 경계획정 문제의 국제법적 기초와 법률적 기초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고 명확하지 않았다.

### ③ 몇 가지 분석

중국과 베트남의 상술한 분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속조약의 ‘제한선(홍선)’에 대해, 즉 동경108도 03분12초선에 대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전속조약 대조도의 제한선 위치 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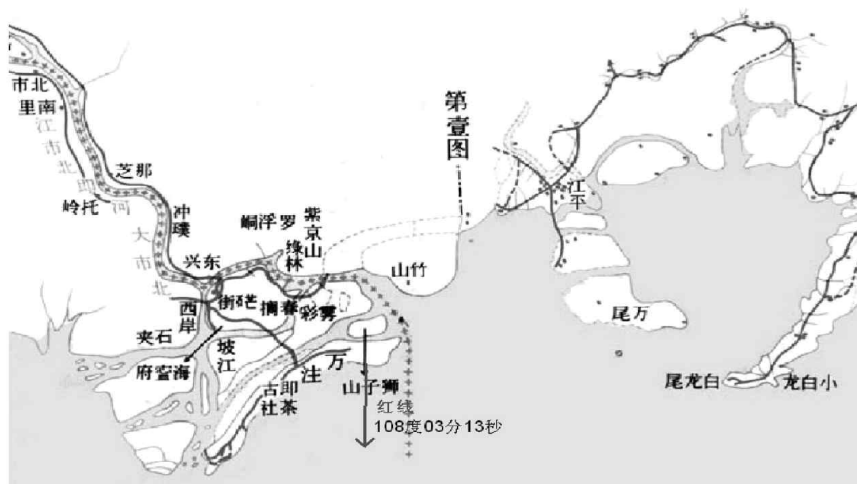


图3 中法界约附图所示“红线”(图中黑线标识部分)位置图

전속조약 원본에는 ‘광동지역 경계업무는 현재의 양국 측량 대신의 측량 경계를 넘어 망지에(芒街) 동쪽과 동북 일대이며 위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모두 중국의 관할로 한다. 해상의 각 도서는 양국 측량대신이 경계선을 그린 것에 따라 남으로 향하게 그리며 이 선은 차고사(茶古社; 중국명 완주万注) 동측 산정상을 지난다. 이선을 경계로 이 선의 동쪽 해상의 섬은 중국에 귀속되고 서쪽은 구토산(山) 및 각 도서는 베트남에 귀속된다.’ 라고 하고 있다.

전속조약의 원문, 즉 ‘중국과 통킹 경계의 경계획정조약’ 규정에 따르면 “광동지역은 협의를 거쳐 경계획정 위원회가 정한 경계획정 이외의 망지에 동쪽과 동북의 분쟁지점은 중국에 귀속된다. 파리자오선 동경 105도43분 이동, 즉 차고사섬 동쪽 산정상을 통과하고 경계의 북남선 동쪽의 도서도 중국에 귀속된다. 이 자오선의 서쪽의 구토산과 기타 섬은 안남(당시 베트남)에 귀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속조약 관련 규정 및 협상과 가장 협상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보면 상술한 조약의 제한선은 연해도서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베이부만의 경계를 획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경계획정 문제가 바다로 나가는 관문 근처 연해 도서의 문제라 하더라도 전속조약도 영토 귀속에 대해 규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협상의 권한 부여의 관점에서 보면 전속조약은 육지 경계의 조약이며 해당 조약이 규정하는 측량조사 범위는 ‘중국과 통킹 경계에 대한 제반처리’에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속조약의 문헌은 법 원문보다 확실하다.

전속조약 자체 혹은 준비문건에는 모두 통킹만, 즉 베이부만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육지 경계선을 남쪽으로 그을 때 당시 중국과 프랑스 양국 대표는 남으로 향하는 부분을 ‘도선’ 혹은 ‘해도섬’ 이라고 각각 불렀다. 원문에는 두 개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하나는 파리자오선 동경 105도43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고사를 지나선 혹은 동쪽 끝 북남선, 즉 제한선(홍선)이다. 조약은 ‘현재 정해놓은 경계선 지도는 두 부인데 각 지도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대신이 낙인찍은 것으로 지도에 나타나는 양국의 새로운 제한선을 경계를 삼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과 같이 원문에서 ‘경계를 구성한다’는 문자처럼 육지경계는 도서 귀속의 의미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오선을 사용하여 도서 귀속 여부를 정하는 것은 당시의 조약법 적용에서 비교적 유행하던 방식이었다.

국제적으로 일부 학자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입장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중 프레스콧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베트남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듯 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제한선(홍선)은 단순히 기점일 뿐이지 종점이 아니며 둘째, 만약 베트남의 주장이 성립이 되더라도 베트남의 차고사 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고, 셋째, 베트남의 입장이 중국과 프랑스가 경계를 논의하던 당시 국제법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넷째 전속조약이 자오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기타 다른 국제조약은 다르지 않고 당시에는 국제조약에서 자오선의 방

법을 사용하여 도서의 귀속 여부를 정하였기에 근본적으로 해양경계 획정선을 정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중국의 입장과 관점이 역사적인 사실, 국제법과 중국-베트남의 해양관할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기니-기니비사우 해양경계중재안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중재법원은 예전 18세기 ~ 19세기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조약의 체결이 보편적인 영해 이외에 어떤 해역의 해상에 주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상술한 원리를 동일하게 전속조약에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조약법률 기술이기 때문이다.

## 5)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해양경계획정 쟁의의 발전

1977~1978년의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 이후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악화되었고 그 후 양국간에는 해양관할권의 쟁의에 기초한 베이부만 해양어업과 오일가스 자원개발의 교섭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쟁의는 해양경계 획정에서 해양어업과 오일가스자원 개발까지 확장되었다.

어민들이 끊임없이 체포되는 것으로 인해 양국 어민이 베이부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정상적인 조업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무장인원이 어민들에게 총기를 사용하여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 어민이 베이부만에서 전통적인 조업을 하려면 해군의 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2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중 3조에는 베이부만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 공화국 사이의 해역으로 해역과 만은 1887년 6월 26일 프랑스와 중국 청나라가 체결한 공약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베트남에 속하는 섬과 해역은 베트남의 법률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Con Co섬부터 만의 출입 기선은 관련해역 봉쇄선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정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1887년의 중국과 프랑스 경계조약은 베이부만의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며 베이부만 해역에는 양국간의 해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2.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과정과 협정의 체결

1991년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양국은 ‘양국 국경사무 처리에 관한 임시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인 협상으로 양국영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1) 중국과 베트남 경계 전문가 협상

양국 정상은 이룬 합의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1992년 10월과 1993년 2월에 제 1, 2차 경계획정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국 육지 경계획정과 베이부만 경계획정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내용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외에도 양측은 경계획정 협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베이부만 지역의 안정과 국면을 유지하고 베이부만 어업과 오일가스전 개발 쟁의의 적절한 처리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을 이루었다.

## 2) 중국과 베트남 정부급 경계협상 및 기본 원칙 협상

사실상 양국관계가 정상화 된 후에도 양국은 베이부만의 해양관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과 갈등이 있어, 베이부만 어업과 오일가스 개발문제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곤 하였다. 심지어 양국 어선이 해상에서 대립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양국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1992년 12월 양국 정상은 회담을 진행하여 양국 영토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전문가급 회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조속히 정부급 회담을 하여 공동으로 인정한 국제법 준칙에 따라 영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대해 합의한다.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국은 협상의 과정에 속도를 내어 해상 및 육지를 포함한 영토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협상이 해결되기 전에 양국은 경계 영토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1993년 8월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첫 번째 회담을 베이징에서 진행하였다. 양국은 관련 베이부만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교환을 하였고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일치점을 이루었다. 같은 해 10월 29일 양국 협상 대표단은 하노이에서 ‘중국과 베트남 국경영토 문제에 관한 기본원칙 협의(이하 기본원칙협의)’를 체결하였다. 협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국은 국제 해양법에 따라, 국제 관행과 실천에 기초하여 협상을 통해 베이부만 경계획정을 할 것에 동의한다.
2. 베이부만 경계획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양국은 형평원칙에 따라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베이부만의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한다.
3. 양국은 베이부만 경계획정을 위한 원칙을 확정된 후 조속히 양국 정부 대표를 통해 베이부만 경계획정 연합 팀을 조직하여 관련 경계획정의 범위, 내용, 법률기초, 관련 사정 및 수단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베이부만 경계선을 확정하여 경계획정의 초안을 만든 후 양국 권한있는 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할 것에 동의한다.

## 3)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

1993년 8월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1차 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하여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섰고 정부급, 실무자급, 기술 전문가급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였다.

총 7번의 정부급 회담, 18번의 실무팀 회담, 3번의 연합전문가 회담, 6번의 어업 전문가 회담과 7번의 관측전문가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3번의 비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 4) 중국과 베트남 정상의 정책 결정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획정 회담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도 양국은 중국 어민이 베트남 해군에게 체포된 것과 베트남이 베이부만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고 또 베트남도 중국이 자원개발을 하고 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5번의 연합 실무자 회의를 하였는데 논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주요 논점은 베트남 해군은 1970년대 베트남이 주장한 동경 108도 13시 12초선에 따라 베이부만에서 조업을 한 중국 어민들을 체포하여 중국어선들이 베이부만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베트남의 이러한 일방적인 관할권 행사 행위는 협의했던 경계획정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해양법에 따라, 국제관행에 따라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995년 11월 베트남 정상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1991년 이후에 양국이 합의한 원칙과 협상에 대해 다시 한번 천명하였고 협의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이에 기초하여 거시적인 것을 중시하여 서로 양해하고 공평합리, 우호협상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1998년 중국과 베트남의 육지경계와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이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1992년 2월 양국 정상은 ‘장기적, 전향적, 선린우호, 전면 협력’의 방침을 확립하였다. 1999년 하노이에서 육지 경계 조약과 2000년 12월 25일 베이징에서 베이부만 경계획정을 해결하는 조약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경계선을 평화, 우호, 안정의 경계로 설정되었다.

### 3.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정의 주요 내용

#### 1) 양국 해양분계선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협정’ 제 2 ~ 5조에는 베이부만에 대한 중국-베트남 양국 해양분계선이 확정되어 있다. 해당 협정에는 중국-베트남이 베이부만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분계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분계선은 21개의 경계점, 그리고 그 사이에 20개 직선을 연결하여 구성하고 있다. 협정은 또한 21개의 경계점의 지리적인 좌표를 기록하고 있다.

협정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베이부만 경계선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인 베이퐁강의 해안으로 통하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략 남쪽으로 뻗어 협정에 규정된 베이부만 봉쇄구선까지 이어진다. 전체 길이는 약 500km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구간: 1 ~ 9 계점 사이의 8직선으로 중국과 베트남 양국 베이부만의 영해 분계선, 양국 영해 분계선은 직선 방향으로 나누어 양국 영해의 상공 해저로 구성(아래 제 1 ~ 9계점: 중국과 베트남 양국 영해분계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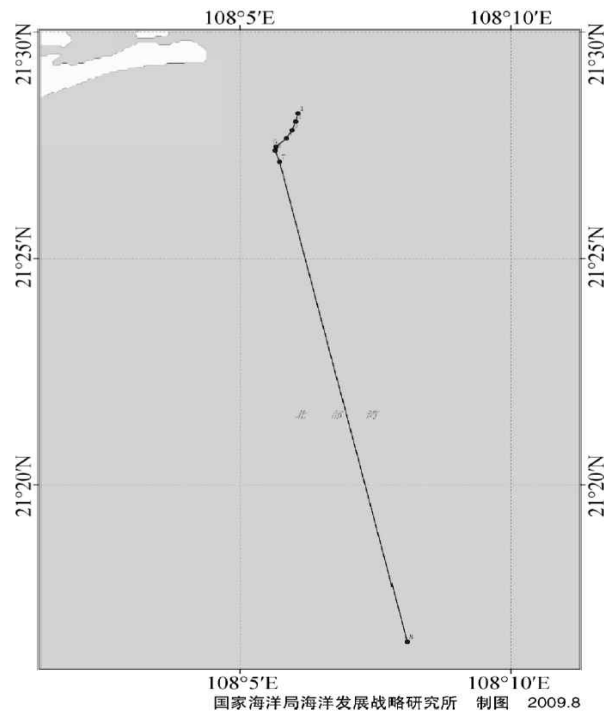


图4 第1—9界点: 中越两国领海分界线

이 분계선의 일부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베이퐁강 입구의 내수 분계선을 구성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베이퐁강 입구의 내수 분계선은 ‘중국-베트남 육지 국경조약’에 확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조약은 “제 61계점부터 시작하여 국경선은 베이퐁허 주향로 중심선을 따라 종점까지 이르는데 제 62계점을 잇는다. 해당 계점은 중국과 베트남 양국 영해 기선의 연결점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구간: 제 9계점 ~ 제 21계점 사이의 12단 직선 연선은 ‘양국 베이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분계선’을 구성한다.(아래 그림 제 9 ~ 21계점: 중국과 베트남 베이부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분계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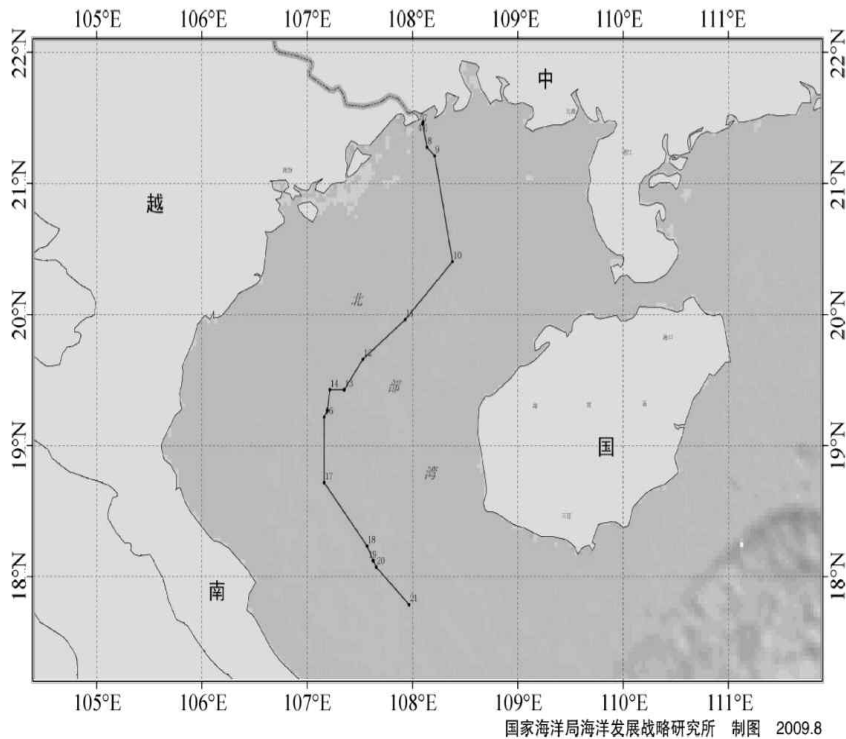


图5 第9—21界点：中越北部湾专属经济区和大陆架分界线

## 2) 해양자원의 협력개발

중국과 베트남의 베이부만 해양경계 분계선은 이미 양국이 베이부만의 각자 해역의 관할 범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 협정 제6조는 양국 각자 자국 관할해역 주권과 주권 권리, 해양관할권 및 상호존중의 의무를 확인하였다.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기반하여 협정 제7조와 제8조는 양국 해양자원의 개발 협력의 의무에 대해 더 나아가 규정을 하였다. 주 규정은 두 가지의 다른 자원, 즉 해저 오일 가스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해 각각 적용이 된다.

제7조에서 양국은 오일가스 천연가스 자원에 대해 경계를 넘는 구조인 경우 양국은 우호협상을 할 의무가 있고 효율적인 개발과 공평한 이익 공유에 대해 고려하여 공동 개발의 협정을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양생물 자원에 대해서는 제8조 규정을 통해 양국은 협력과 협상을 하여 베이부만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지속가능한 발전문제에 대한 협력,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보호와 관리 이용에 대해 협력할 것을 동의했다.

## 4.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에서의 국제법원칙의 적용

### 1)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이 가지는 탄탄한 법률적 기반

중국과 베트남이 경계획정을 하기까지 27년의 시간이 걸렸다. 양국이 2000년 12월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정’에는 “조약 당사국은 1982년의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공인된 국제법 각 항의 원칙과 국제실천에 따르며 베이부만의 관련사정을 고려하는 기초위에 형평원칙에 근거하여 우호 협상을 통해 양국 베이부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선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이 국제법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상은 협상임과 동시에 중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법률실천이다. 그 핵심은 국제법이고 특히 국제해양법 원칙, 규칙, 제도를 중국과 베트남 양국이 베이부만과 이웃하고 또 마주보고 있는 해안의 객관적 사정에 적용한 것이다.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양법 협약 74조와 83조는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획정의 의무인 우호협상을 베이부만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은 공평한 결과를 이루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구체적인 문제에서 쟁의가 있었으나 협상해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술한 방식에 기초해 처리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1994년 해양법 협약 비준 후, 오랫동안 고수하던 동경 108.03,13선의 입장을 내려놓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베이부만 경계획정 협정은 중국과 베트남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며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베이부만의 상황에 적합하게 해결한 사례이다.

## 2) 협상에서 적용한 국제 관습법원칙

앞선 여러 판례를 고려해 양국은 지금까지의 관습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따라 연해국은 영해 주권과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관할권은 그 육지 영토주권의 연장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국은 협상의 과정에서 ‘육지가 해양을 통치한다’ 라는 원칙, 육지는 해안을 통해 해양을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자연적 연장은 다른 국가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과 우연적인 특수한 특징이 가져올 결과의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 해양경계실천을 참고하여, 양국은 해안선의 일반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불규칙한 해양지형이 야기할 수 있는 차단과 과대한 왜곡 문제를 처리하였다. 양국은 양국이 베이부만의 섬과 해안이 일반적으로 향하는 것을 참고하여 섬이 해양경계 획정선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 결정하였다. 해안이 일반적으로 섬과 일치되면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전부의 효력을 얻는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일반적으로 뾰족한 섬에 대해서는 부분효력이나 무효력을 부여한다.

베이룬 강 부근 경계획정에서는 중국의 바이쑤옌(白苏岩)과 베트남의 Chang tay섬으로 기점을 구성하였다. 베트남의 바이룽웨이 섬은 베이부만 해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거리는 베트남 해안에서 110km가 떨어져 있고 중국 하이난 섬에서 130km가 떨어져 있다. 이 섬이 양국 경계획정 관련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적인 경위를 고려하면 중구과 베트남은 협상에서 이 섬에 12해리의 영해와 3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외에도 베이부만의 만 입구에는 베트남의 혼과섬이 있는데 베트남 대륙 해안에서의 약 13해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섬이 경계획정에 미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 섬에 반효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베이부만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양국의 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오일가스자원의 구성과 탐사, 개발이었다. 또 베이부만에서 양국 어민의 전통적인 조업권과 어업자원에 관한 문제, 경제적 가치, 항로 등도 중요한 문제였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양국은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고 양국정부는 베이부만 연안지역 국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연안지역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측의 협력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 3) 중국과 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에서 얻은 공평한 결과

#### ① 총체적인 면적

양국은 20단의 직선을 이어 베이부만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분계선을 정하여 전체면적의 비례를 이루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비례는 46.77:53.23이다. 계산 방법이 달라서 중국이 제공하는 면적의 비례와 베트남의 것과는 각각 다르지만 이는 산술적인 결과가 각각 다른 것일 뿐이다. 이 결과는 양국이 국제법 준칙에 근거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온 것이다. 또한 양국이 향유할 영해주권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권리와 관할권 및 해양권익을 획정한 것이다. 또한 경계획정 시 형평 원칙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은 경계선 획정 과정에서 해안선에서 떨어져 뺀 섬에 대해 형평 원칙을 근거로 과장되고 왜곡되는 결과를 적절히 처리했다. 이 중 베트남 해안 외의 혼과섬은 50%의 효력을 부여받았고, 베이부만 해역의 중심에 위치한 바이룽웨이 섬에는 12해리와 3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만 부여했다. 상술한 결과는 양측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형평 원칙을 적용한 결과 최종 경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해양 경계 획정의 국제적 관행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베트남 전문가 위엔홍타오는 국제 해양 경계획정 관행을 위해 확인된 비례 원칙을 적용해 중베트남 해양 경계 획정 결과를 검증한 바 있다. 베이부만 해안선의 길이 비례는 1.1:1로 양국 각자 해역의 면적 비율은 1.135 대 1이다. 즉 측정 결과가 비슷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결론은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결과는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것이다.

비례 개념은 형평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육지가 해양의 권리를 지배한다, 육지 해안을 통한 해양 지배 등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비례 개념 자체가 독립적인 법적 연원은 아니며 형평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 ② 어업문제

베이부 만은 수심이 얕으며 등심선이 대략 해안선과 평행을 이룬다. 베이부 만은 해저 지세가 평탄하고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경사져 있으며 경사각은 약 2도, 수심은 보통 20~60m, 평균 38m로 동남부 깊이가 비교적 깊으며 남쪽만 입구의 가장 깊은 곳은 100m에 달한다. 베이부 만은 아열대 해양성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수 표층의 온도는 연평균 섭씨 21.94° 에서 26.97° 로 각종 어류의 번식에 적합하여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베이부만 어업 자원의 대부분은 연근해성 어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포는 넓고 집단은 크지 않으며 체형이 작고 수명이 짧아 번식력이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해양 조건의 제약 때문에 베이부만 어종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어류로 만 안에서 짧은 거리를 회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해 자유 원칙하에서 양국 어민들은 전통적인 조업권을 형성해왔다. 중국과 베트남은 생물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어업자원의 보호, 관리, 이용을 위해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였다. 상술한 대로 양국은 두 나라 모두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인 만큼 양국국민, 특히 베이부만 연안 어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베이부만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어업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상이 계속될수록 중국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양국의 베이부만 경계는 어업 배치 문제를 동시에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며 경계획정 협정은 어업 협력 협정과 동시에 서명하고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00년 12월 25일 양국은 동시에 베이부만 경계협정과 베이부만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어업협정은 중국과 베트남의 베이부만에서 어업협력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양국은 베이부만 생물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베이부만 배타적 경제구역에서의 양국 생물자원 양성, 보호, 관리, 활용에 관한 협력사항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관리, 이용, 협력의 무 규정은 국제적 실천과도 일치한다. 베이부만 경계협정의 법률적 기초 위에 어업 협력 협정은 양국의 어업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다.(아래 그림 공동어업 수역 안내도 그림 참조;가운데 음영 부분이 공동어업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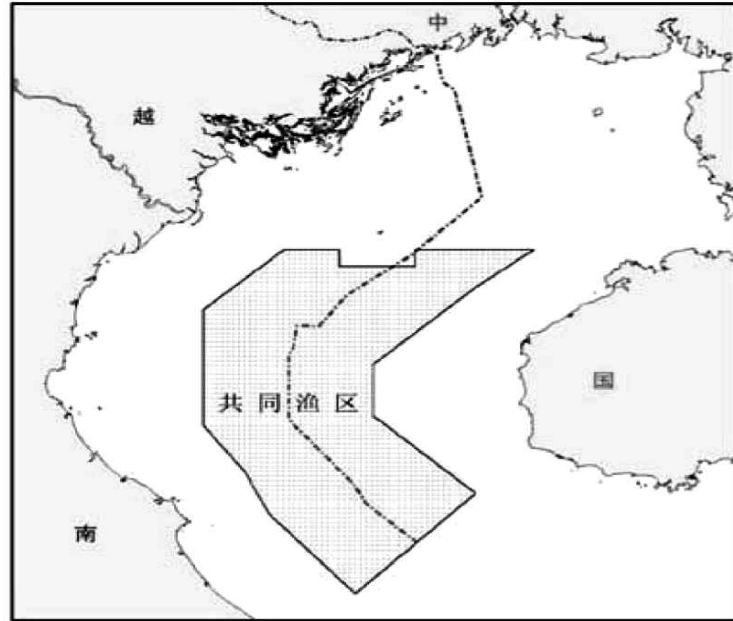


图6 共同渔区示意图

첫째, 협정의 목적과 법률원칙 기초를 확립하였다. 목적은 중국과 베트남 국민의 전통적인 선린우호의 관계를 수호·발전과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베이부만 수역의 해양생물자원 보호와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 법률원칙 기초는 베이부만에서의 각자의 주권, 권리, 관할권, 평등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어업수역은 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며 베이부만 이북 북위 20도 이남으로 중국과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 양측 30.5해리로 규정해 놓고 있다. 공동어업수역의 기한은 12년으로 하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3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모두 15년이다. 양국은 각자의 분계선에 따라 공동으로 자국 쪽 어업수역에 관리 감독하며 양국은 연합하여 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매년 양국은 공동으로 어업수역 내에 조업어선 수량에 대해 협정에서 설정한 중국과 베트남 베이부만 어업연합 위원회가 정한다. 공동어업수역 이북 베이부만 해역의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간지대의 성질을 가지고 안배된 수역으로 4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양국 어선이 들어와 조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4년이 지난 후 양측은 자원의 상황에 따라 배타적 경제구역에 상호 입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상의할 수 있다. -베이룬허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하류 부근에 15년을 기한으로 양국 해역 분계선 각 3해리의 범위로 하여 소형 어선 완충지대를 설정하였다. 이는 소형 어선이 완충구역에 잘못 진입한 것에 대해 나포나 처벌은 하지 않고 해당 구역을 떠날 것을 명령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셋째, 쌍방이 베이부만 어업연합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력에 관한 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어업과 관련하여 연합위원회의 시스템, 직책 권한, 운영 방식, 그리고 베이부만의 생물자원의 보호, 관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양측 어민 및 어선에 대한 해상 구조와 긴급 대피, 베이부만 해상항행안전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다섯째, 공동어업수역에서 장기적으로 어업협력을 한다는 정신을 확립하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인 12년이 도래한 후 자동적으로 3년을 연장이 된다. 그 후 양측은 계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어업 협력 협정은 양국의 어업 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전통 어획권의 법제도에서 현대 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베이부만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어업산업 구조를 조정해 어민들의 산업전환으로 여유가 생기도록 계획을 하여 중국 농업농촌부, 광시자치구, 광둥성, 하이난성은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어업 협력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과 베트남이 베이부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베이부만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베이부만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연안지역 양국 국민의 생계는 베이부만의 어업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베이부만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량은 연간 약 60만 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어민이 베이부만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양은 이미 100만 톤을 초과하여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한계치를 훨씬 초과하여 베이부만은 어업 자원의 위축과 고갈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은 베이부만의 새로운 협력모델 수립, 베이부만 어업자원에 대한 보호, 관리 강화, 특히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 강화, 베이부만에서의 양호하고 안정적인 어업작업 시스템 구축, 베이부만의 생태환경 보호 및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 어업협정 체결을 하였다. 이는 양국 국민과 다음 세대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 ③ 오일가스 문제

베이부만에는 두 개의 석유지질 구역이 있는데 바로 베이부만 분지와 잉꺼하이(莺歌海)분지이다.

베이부만 분지는 해역 동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레이저우(뇌주)반도 남부 및 하이난섬 북부 등마이-딩안 이북의 일부 육지, 즉 동경 108.00~110.30, 북위 19.40'-21.05, 면적은 약 1만9천km<sup>2</sup>로 해저 지형은 평탄하며 수심은 60m보다 낮다. 이 분지는 신생대층을 중심으로 한 단구분지로 북부 함몰구역, 치시(企西) 용기, 남부 함몰구역 3개의 1급 구조 구역으로 구분된다.

잉꺼하이 분지는 중국 하이난섬 서쪽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베이부만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길이는 약 750km, 폭은 약 200km, 면적은 13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분지는 신생대의 대형 균열식 함몰분지로서 깊은 제3계 지층이 쌓여 있고

함몰된 부분의 중심은 1,9000m에 이른다.

중국-베트남의 베이부만 가스전 분쟁은 베이부만 중간 해역인 잉꺼하이 분지의 가스구조 확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1970년대에 베트남은 베이부만 동경 108°에서 서쪽 범위 내에 들어가 탐사 작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베이부만을 중국-베트남 공동 수역으로 하고 양국이 공식적으로 해역을 설정하기 전에 북위 20도 이남, 18도 이북, 동경 107도 이동, 108도 이서 등 중간 해역에 대해 조사와 탐사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에 답하지 않았고 그 후, 1988년, 1990년, 1991년, 1994년에 여러 차례 이 같은 중간지역 탐사작업에 들어가 해당 지역을 베트남의 대외개방 가스 입찰공고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간지역으로 들어가 탐사활동을 벌이게 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 양국의 갈등은 점점 쟁의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과 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협정은 양국의 대륙붕주권과 관할권을 기초로 양국이 대륙붕 분계선을 정하고 적절히 쟁의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협정에서는 “이 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 양국 베이부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주권, 주권권리와 관할권을 상호 존중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양국은 각자의 대륙붕의 자원관리, 개발, 탐사에 대해 주권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동시에 이와 함께 국제관행을 참고하여 베이부만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대륙붕 경계선이 베이부만 중간 해역에 있는 잉꺼하이 분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협정은 “어떤 석유, 천연가스 단일 지질구조나 기타 광물이 본 협정 제2의 경계선을 넘을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이 구조나 광산의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및 개발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협정의 상술한 규정은 통용되는 국제 통행방식과도 부합한다. 예를 들면 북해연안국 간 대륙붕 경계협정은 단일 지질 석유구조나 유전, 또는 모래나 자갈을 포함한 어떤 다른 광물의 단일 지질구조나 장소가 분계선을 넘어 매장된 경우, 분계선 너머에 있는 구조나 유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국가는 이러한 지질구조나 자원의 개발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는 이 구조의 가장 효율적인 채굴이 가능하도록 당사국들은 협의하여 노력해야 한다). 많은 국가는 협정 중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북해 연안국의 공동개발과 관행에 대해 긍정하였고 광물자원의 통일성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실질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협정의 기초 위에,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베트남석유총공사는 2005년 말 하노이에서 베이부만 오일가스개발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베이부만 가스자원 탐사와 경계선을 넘는 가스 채굴에 대해 양국 석유공사가 서로 참여하는 상업적 형태의 협력을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 5.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의 시사점

### 1) 정치적인 보장

영토, 국경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양국 국민의 민족감정, 장기적 이익, 주권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계획정 협정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과 결정적인 요소는 당사국 국내의 정치적인 안정과 지도자와 정치권력이 대내적으로 권위가 있는지,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양국의 관계 현황과 발전 수요를 모두 고려 할 수 있는지, 편협한 민족주의의 영향과 간섭을 최소화하고 양국 관계와 전향적인 발전을 수호할 수 있는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존중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중국-베트남의 두 차례 베이부만 경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법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외에도 양국 간의 신뢰 부족과 양국 관계 악화, 그리고 협상 자체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양측의 입장과 관점의 논쟁일 뿐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논쟁의 해결은 당연히 불가능했다.

90년대 들어 새로운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1991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부장이 방중하였고 양국 정상은 “과거는 끝내고 미래를 개척하자” 는데 합의하여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를 계기로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국경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과 베트남 육지 국경문제 해결과 베이부만 협상의 정치적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양국 지도자들이 선린우호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베이부만 경계 획정 협상을 성사시키는 관건이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고도의 정치적 안목과 단호한 의사결정을 통해 ‘거시적인 요소 중시, 상호이해, 공평합리, 우호협상’ 이라는 국경 협상 방침을 확정하고 베이부만 경계 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 협상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충돌을 완화하고 이견을 좁히며 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며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영토와 국경,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당사국 양자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지지부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연에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당사국의 외교적인 의제로 하여 조속히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며 기다린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저절로 형성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육계 경계획정과 베이부만 경계획정에서 쌓은 경험과 얻은 교훈에 대해 양국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역설적으로 분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심각하고 민감하더라도 당사국의 정치 외교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분쟁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상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분쟁 완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영토경계 및 해양경계협상은 당사국 정치외교 당국이 분쟁의 기복과 일시적 어려움, 언론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평등한 협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성실하고 점진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며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협상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국 양국이 현 상태를 유지하여 쟁의를 심화시키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고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임시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들어가 활동하지 않으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국제정치적으로 최단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며 분쟁해결의 적절한 시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협상 자체의 진전유무에 관계없이 당사국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국제사회와 국내정치 모두에 대해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며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소이다.

3) 국제법에 기초하여 국제관행을 참고하며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양국 국민의 근본과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평등협상, 상호이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는 이념에 기반하여 윈윈할 수 있는 공평한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

① 공평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국제법의 기초에서만 나올 수 있다. 국경, 영토, 해양 경계에 관한 협상은 국가 간의 정치적 협상이다. 또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준칙으로 협상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협상은 주권국가 간 평등한 협상으로 주권 평등, 조약 등 국제법적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협상에서 국제법은 양자협상의 공통된 근거이자 기초이며, 한쪽의 주장은 국제법을 근거로 해야 다른 한쪽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제법과 그 안에 포함된 공평과 정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쌍방의 주장과 근거의 합법성,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쌍방의 주장 사이에 공평과 형평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넷째, 협상의 최종결과는 국제법과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고 양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래의 관행에서 준수될 수

있다.

② 형평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당사국은 반드시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사실과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충의 관계이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의 목적은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정도와 내용, 성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중국과 베트남 경계획정에서 양국은 1887년 전속조약에 규정된 동경 108도 03분12초선의 문제와 베이부만 양국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 바이퉁웨이의 역사 경위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여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였고 양국이 1982년 비준한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국제해양경계획정 관행에 기초하여 양국간의 분쟁과 쟁의를 적절하게 해결하였다.

③ 평등 협상, 상호이해는 양국의 분쟁과 쟁의를 해결해 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해양경계협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역사, 지리, 육지 및 영토주권의 합리성과 합법성에 기초한 정당한 해양 권익이 보호 되는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 협정에서 획정된 해양경계선은 양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양측이 기존에 주장해온 쟁의와 서로 인정하지 않던 권리 주장을 상호 인정하는 권익이자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권관할권익으로 전환시켰다.

지속적인 쟁의는 양측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에 협상으로 쟁의를 해결해 쟁의를 명확한 권익으로 바꾸어 규정하는 것은 양측에게 유리하며 국민의 근본과 장기적인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내재적인 논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상술한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 중국-베트남 베이부만 경계획정협정을 비준하였다. 이 사실은 경계획정의 결과가 양국 각계 국민의 이해와 인정,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4) 베이부만 해양경계 획정은 중국과 이웃국가가 이룬 첫 번째 경계획정이며 어떻게 협상을 조직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경계획정시 참고할 성공적인 경험과 실천을 쌓았다.

경계획정은 일종의 복잡한 시스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절차를 잘 진행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안보, 어업, 양국관계, 교통, 우호증진 등 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베이부만 경계 협상에서도 협상을 조직할 당시, 정부급 대표단, 비공식적인 협상, 베이부만 연합 실무팀, 전문가그룹, 어업전문가, 각계 비공식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고 총체적으로 협상의 절차와 상황을 파악하여 추진하였다.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 국제실천, 역사, 지리, 제도 기술 등 다양

한 분야, 학문, 지식도 다룬다. 기초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외 협상 전략과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협상 과정에서 국내의 관련 부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제법, 국제관행, 국제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방법을 연구하고 경계획정의 협상 방안을 모색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계획정 및 어업협정에서 사용될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협상에 정치, 지혜, 물적 역량, 기술을 제공하여 하나의 업무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써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후의 중국과 기타 국가간에 있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